

소방방재청고시 제 호

위험물안전관리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술기준 등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00월 일

소 방 방 재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시험의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파괴시험방법을 개선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 및 위험물운송자교육의 강습교육수수료 및 실무교육수수료의 기준을 물가변동에 연동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시험의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파괴시험방법을 개선함 (안 제31조제1호 단서)

- (1) 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시험을 비파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비파괴시험시험의 종류에서 진공시험을 삭제함

나.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강습교육수수료 및 실무교육수수료를 인상함 (안 제163조)

- (1) 2004년 7월 규정된 안전관리 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하고자 함
- (2) 적정한 수수료 수입을 확보하여 안전관리 관련 교육의 내실화를 확보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및 법무부와 합의됨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의견조회 :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31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 규정된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가. 에너플러판 또는 밀판의 교체공사 중 옆판의 중심선으로부터 600mm 범위 외의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당해 교체부분이 저부면적(에너플러판 및 밀판의 면적을 말한다)의 2의 1미만인 경우에는 교체부분의 전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는 방법

나. 에너플러판 또는 밀판의 교체공사 중 옆판의 중심선으로부터 600mm 범위 내의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당해 교체부분이 당해 에너플러판 또는 밀판의 원주길이의 10% 미만(필렛용접부에 있어서는 용접길이 300mm 이하)인 경우에는 교체부분의 전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는 방법

제131조제2호사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착장소의 최고주위온도 (단위 ℃)	표시온도 (단위 ℃)
28 미만	58 미만
28 이상 39 미만	58 이상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제13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용기

제13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제7호에 정한 용기

제153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밀판 또는 에놀러판의 전부를 교체하거나 전부에 대하여 점검보수공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밀판 또는 에놀러판에 대한 두께측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8조제3항제1호 표중 “서비스터널변위계설치”를 “배관터널내공변위계설치”로, “서비스터널변위측정”을 “배관터널내공변위측정”으로, “갱도라이닝강도측정”을 “슛크리트강도측정”으로, “갱도콘크리트두께측정”을 “슛크리트두께측정”으로 한다.

제159조제1항제1호라목 표중 “서비스터널변위측정”을 “배관터널내공변위측정”으로, “갱도라이닝강도측정”을 “슛크리트강도측정”으로, “갱도콘크리트두께측정”을 “슛크리트두께측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최초시험개소”를 “최초시험량”으로, “시험개소”를 “시험량”으로 한다.

제1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규칙 별표 25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수수료(교재대금을 제외한다)는 다음 표와 같다.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비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5만5천원
	위험물운송자	5만5천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4만5천원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7만2천원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4만8천원

<p>2.~6. (생략)</p> <p>제131조(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 바. (생략)</p> <p>사.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부착장소의 평상시의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표시온도를 갖는 것을 설치할 것</p>	<p><u>나. 에놀러판 또는 밀판의 교체공사 중 옆판의 중심선으로부터 600mm 범위 내의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당해 교체부분이 당해 에놀러판 또는 밀판의 원주길이의 10% 미만(필렛용접부에 있어서는 용접길이 300mm 이하)인 경우에는 교체부분의 전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는 방법</u></p> <p>2.~6. (현행과 같음)</p> <p>제131조(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가. ~ 바. (현행과 같음)</p> <p>사. ----- ----- ----- -----</p>
--	---

<p>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최대용적 5ℓ 이하의 내유성(耐油性)의 용기</p>	<p>----- ----- -----</p>
<p>4.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p>	<p>4. ----- ----- -----</p>
<p>가. 최대용적 30ℓ 이하의 파이버(fiber)판상자(플라스틱내용기가 부착된 것)</p>	<p>가. ----- ----- -----</p>
<p>나. 고무 또는 합성수지제의 용기로서 부식, 마모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수납 위험물의 내압(內壓) 및 취급시의 하중에 의하여 당해 용기에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강제의 컨테이너에 수납한 것에 한한다)</p>	<p>나. ----- ----- ----- ----- ----- ----- -----</p>
<p>5. 제5류 위험물 중 셀룰로이드류를 수납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p>	<p>5. ----- ----- -----</p>
<p>가. 최대수용중량이 225kg 이하의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p>	<p>가. ----- -----</p>
<p>나. 최대수용중량이 셀룰로이드판 [권상(卷狀), 관상(管狀) 또는 봉상(棒狀)의 것을 포함한다]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125kg, 그 밖의 셀룰로이드류를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40kg 이하의 파이</p>	<p>나. ----- ----- ----- ----- ----- ----- -----</p>

<p>버판상자</p>	<p>-----</p>
<p>6. 제5류의 고체위험물 중 니트로셀룰로이드[25% 이상의 물에 습윤한 것 또는 질소량이 12.6% 이하인 것(가소제 및 안료와의 합성물을 포함한다)에 한한다]를 수납하는 최대수용중량이 225kg 이하의 파이버드림(플라스틱내용기가 부착된 것 또는 방수성의 것에 한한다)</p>	<p>6. ----- ----- ----- ----- ----- ----- ----- -----</p>
<p><u><신 설></u></p>	<p><u>7.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u></p>
<p>제139조(운반용기의 특레) 규칙 별표</p>	<p>제139조(운반용기의 특레) -----</p>
<p>19 I 제3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 ----- -----</p>
<p>1. 제138조제1호에 정한 용기</p>	<p>1. -----</p>
<p>2. 제138조제2호에 정한 용기</p>	<p>2. -----</p>
<p>3. 제138조제3호에 정한 용기를 내장용기로 하여 나무상자, 플라스틱상자 또는 파이버판상자의 외장용기에 수납한 것</p>	<p>3. ----- ----- ----- -----</p>
<p>4. 제138조제4호에 정한 용기(동호나목에 정한 용기에 있어서는 운반시의 하중에 의하여 당해 용기에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에 한한다)</p>	<p>4. ----- ----- ----- ----- -----</p>
<p>5. 제138조제5호에 정한 용기</p>	<p>5. -----</p>

<p>6. 제138조제6호에 정한 용기 <u><신 설></u> 제153조(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 ①·②(생략) ③두께측정시험은 시험개소의 표면이물질을 제거한 이후에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사용하여 1/100mm까지 측정하며, 그 시험개소·판정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u><단서 신설></u> 1.~3. (생략) ④·⑤ (생략) 제15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①·② (생략) ③규칙 별표 25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암반탱크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공량은 다음 표에 의할 것</p>	<p>6. ----- 7. 제138조제7호에 정한 용기 제153조(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 ①·②(현행과 같음) ③두께측정시험은 시험개소의 표면이물질을 제거한 이후에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사용하여 1/100mm까지 측정하며, 그 시험개소·판정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u>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밀판 또는 에놀러판의 전부를 교체하거나 전부에 대하여 겹침보수공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밀판 또는 에놀러판에 대한 두께측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u> 1.~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p>
--	--

